

1. 개정이유

‘목재문화진흥회’를 ‘목재문화산업진흥회’로 변경하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공포(‘26.4.21)되어,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목재문화산업진흥회 역할을 확대하고,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공포·시행 '23.5.16.)에 따라 목재등급평가사 자격 관련 별표를 ‘별표 1의5’에서 ‘별표 1의6’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 (현행) 시행령 [별표 1의5] 수입 목재 또는 목재제품 검사기관의 지정기준
시행령 [별표 1의6] 목재등급평가사의 자격

2. 주요내용

가. 목재문화산업진흥회로의 명칭 정비(안 제3조제1항내지제4항, 제10조, 제11조 개정)

1) 법률 개정에 따라 ‘목재문화진흥회’를 ‘목재문화산업진흥회’로 변경
나. 국산목재 또는 국산목재제품 확인 업무 수행기관 확대(안 제14조제2항 개정)

1) 시행령 개정에 따라 국산목재 또는 국산목재제품 확인 업무 수행
기관에 목재문화산업진흥회장을 추가

다. 목재등급평가사 자격 관련 정비(안 제15조, 별지 제18호의7서식)

1) 조문 중 [영 별표 1의5]를 [영 별표 1의6]으로 하고, 별지 서식 중
‘별표 1의3’을 ‘별표 1의6’으로 수정

라.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정비(안 제2조 개정)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26.7.1.)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규정하는 조문에 ‘통합특별시장’ 추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특별시장·광역시장”을 “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으로 한다.

제3조의5제1항 중 “목재문화진흥회”를 “목재문화산업진흥회(이하 “목재문화산업진흥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중 “목재문화진흥회”를 각각 “목재문화산업진흥회”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목재문화진흥회의 조직·운영)”을 “(목재문화산업진흥회의 조직·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목재문화진흥회”를 각각 “목재문화산업진흥회”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목재문화진흥회 임원”을 “목재문화산업진흥회 임원”으로 한다.

제14조의2제2항 본문 중 “한국임업진흥원장”을 “한국임업진흥원장 또는 목재문화산업진흥회장”으로, “영 제32조제5항제5호”를 “영 제32조제6항”로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 및 제2항 중 “별표 1의5”를 각각 “별표 1의6”으로 한

다.

별지 제18호의7서식 첨부서류란 제1호 중 “별표 1의3”을 “별표 1의6”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7년 4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지역시행계획의 추진 실적 제출방법) <u>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u> (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지역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조(지역시행계획의 추진 실적 제출방법) <u>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u> ----- ----- ----- ----- -----.
제3조의5(목재교육전문가 자격증의 발급 등) ① 법 제10조의5제3항에 따른 목재교육전문가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의4서식의 목재교육전문가 자격증 발급신청서에 여권용 사진 2장을 첨부하여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u>목재문화진흥회</u> (이하 “ <u>목재문화진흥회</u> ”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제3조의5(목재교육전문가 자격증의 발급 등) ① ----- ----- ----- ----- ----- ----- <u>목재문화산업진흥회</u> (이하 “ <u>목재문화산업진흥회</u>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u>목재문화진흥회</u> 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하	② ----- ---- <u>목재문화산업진흥회</u> ----- ----- ----- -----

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제1호의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주민등록표 초본을 말한다)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 3. (생략)

③ 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거나 자격증의 기재사항에 오류 등이 있어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의4서식의 목재교육전문가 자격증 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목재문화진흥회에 제출해야 한다.

1. · 2. (생략)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목재문화진흥회는 목재교육전문가 자격증을 신청인에게 발급 또는 재발급하고, 별지 제2호의5서식의 목재교육전문가 자격증 발급대장을 작성·관리해야 한다.

⑤ (생략)

제11조(목재문화진흥회의 조직 ·

-----.

1. ~ 3. (현행과 같음)

③ -----

----- 목재문화산업진흥회 -----
-----.

1. · 2. (현행과 같음)

④ -----
----- 목재문화산업진흥회 -----

-----.

⑤ (현행과 같음)

제11조(목재문화산업진흥회의 조

운영) ① 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목재문화진흥회에는 임원으로 회장·부회장·이사 및 감사를 둔다.

② 목재문화진흥회에는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며,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지부(支部)를 둘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목재문화진흥회 임원의 임기·선출방법 및 지부의 명칭·관할 등 목재문화진흥회의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목재문화진흥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14조의2(국산목재 또는 국산목재제품의 확인) ① (생략)

② 한국임업진흥원장은 법 제19조제4항 및 영 제32조제5항제5호에 따라 국산목재 또는 국산목재제품의 확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

직·운영) ① -----
-- 목재문화산업진흥회-----

-----.

② 목재문화산업진흥회-----

-----.

③ -----
----- 목재문화산업진흥회 임
원-----

-----.

제14조의2(국산목재 또는 국산목재제품의 확인) ① (현행과 같음)

② 한국임업진흥원장 또는 목재문화산업진흥회장은-----
---- 영 제32조제6항-----

-----.

명서(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
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
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
다)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
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
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
업자등록증명 사본을 직접 제출
하도록 해야 한다.

③·④ (생략)

제15조(목재등급평가사의 등록)

① 법 제19조의4제1항에 따라
목재등급평가사로 등록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8호의7서식의
목재등급평가사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
다.

1. 영 별표 1의5에 따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2.·3. (생략)

② 지방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
라 신청한 사람이 영 별표 1의5

---. -----

-----.

③·④ (현행과 같음)

제15조(목재등급평가사의 등록)

① -----

-----.

1. -- 별표 1의6-----

2.·3. (현행과 같음)

② -----
-----별표 1의6

에 따른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의8서식의 목재등 급평가사 등록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18호의9서식의 목재등 급평가사 등록대장을 작성·관 리해야 한다. ③ (생 략) 1. · 2. (생 략)	----- ----- ----- ----- ----- -----. ③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	--

[현행]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의7서식] <개정 2024. 8. 6.>

목재등급평가사 등록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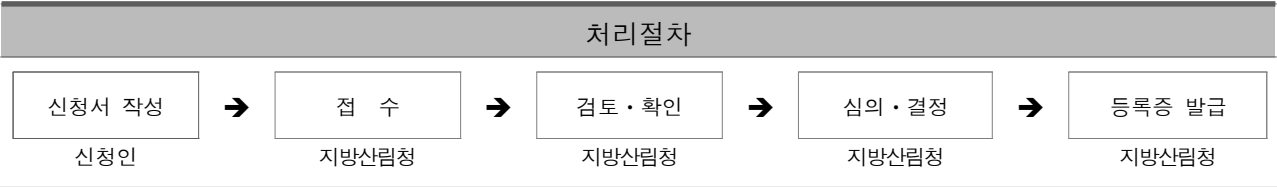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성 별
	전화번호/Fax			전자우편	
	주소				
	해당 분야 경력/신청사유				
자격개요	자격내용				
	양성과정명/교육기간				
	양성과정 이수일				
	검사범위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의4,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목재등급평가사로 등록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산림청장 귀하

첨부서류	1.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2. 목재등급평가사 양성과정 이수증명서 3.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3.5cm × 4.5cm 증명사진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변경]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의7서식] <개정 2024. 8. 6.>

목재등급평가사 등록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성 별
	전화번호/Fax		전자우편	
	주소			
	해당 분야 경력/신청사유			
자격개요	자격내용			
	양성과정명/교육기간			
	양성과정 이수일			
	검사범위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의4,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목재등급평가사로 등록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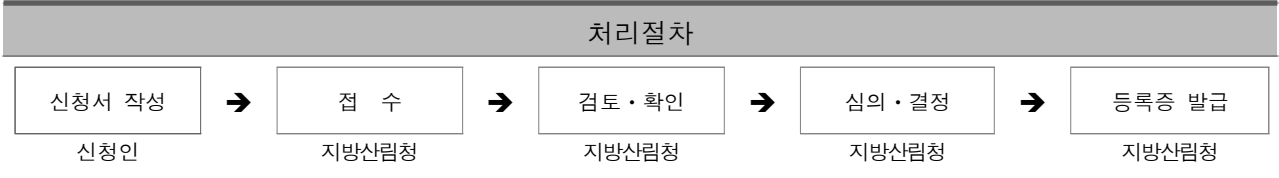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산림청장 귀하

첨부서류	1.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6에 따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2. 목재등급평가사 양성과정 이수증명서 3.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3.5cm × 4.5cm 증명사진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